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 현황과 정책적 개선 방안

정지윤* · 김영철* · 강경식*

1. 서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 정보화, 산업구조 개편 등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가 급격하게 증대되고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및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도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지구촌의 이주민 수는 2억1천4백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년 전 세계 인구의 3.1%씩 증가하고 있다(국제이민기구 홈페이지). 이와 같이 글로벌 시대의 디아스포라(Diaspora)의 확산으로 인해 다문화 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국제적인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민간교류의 장을 열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된 이주민의 증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규모를 급격하게 증가시켰고, 그 결과 한국사회의 인적 구성원이 크게 변화되었다. 한국사회는 더 이상 한민족으로만 구성된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함께 모여 사는 곳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과거의 예측이 현실화 된 것이다(권재일 외, 2008). 따라서 국내에 유입된 이주민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외국인이라고만 볼 수 없다. 결혼으로 인해 이주한 경우 이들의 2세는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것이며, 근로자들은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의 주요 인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국인을 위해 효과적인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언어 및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주류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들이 소유한 언어·문화적 배경을 강점으로 살릴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즉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이행해 감에 따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위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다문화사회에의 대응 방안에 대해 전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 등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학술적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의 교육에 대한 연구나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져 오기는 했지만, 거시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배려 등은 현실화되고 있지 않다. 특히 다문화사회의 문제가 눈앞에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그 연구나 양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우리나라 사회가 다문화 사회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한, 전 세계적인 국제교류와 해외이주 및 유학의 증가로 발생하는 편견, 차별, 갈등 양상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반 문제를 연구하고, 각국의 국제교류경영정책과 동향에 맞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은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다문화 사회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다문화 교육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그 과정에 필요한 요구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탐색하고, 향후 다문화 교육의 그 질적 수준을 확보함으로써 우리의 다문화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 교육의 문제점

급속히 증가하는 다인종·다문화 인구의 유입으로 인적구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NGO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의 인권보호차원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또한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 및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짧음으로 인해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은 전반적으로 양적 횡수의 부족은 물론, 종류별 편중성을 띠고 있으며, 동시에 전문 연구기관의 부재로 인한 콘텐츠의 질적 저조 및 시행기관이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나마 다문화 가정 자녀와 근로자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민간단체의 보조와 자체적 운영을 통하여 다문화 교육이 지속성 있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2.1 다문화 교육의 양과 횡수 부족

양계민 등(2009)의 “미래한국사회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를 통해 경기도 시흥시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시흥시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00곳 중 다문화가정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32곳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19곳은 가정방문 아동양육지도나 부모들 프로그램 진행시 아동휴게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들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들 대상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양계민, 조혜영, 이수정, 2009).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외국인 복지센터 세미나와 행사 참여를 통해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다문화가정 어린이 보육은 현재 상황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어린이들은 언어적·문화적·심리적 문제가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현 상황이 전문적 지원이나 프로그램을 수용할 만한 여건을 갖출 수 없는 상황이다. 위의 자료를 통해 보면 시흥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관내에 거주하는 1~8세 사이 108명 정도의 아동의 보육을 위한 다문화 놀이방이 영아와 유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활동은 지역사회 아동 문화체험 연계프로그램으로 분류되어 진행되고 있

는데, 공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 기인함인지 별다른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경기도 시흥시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가 편중되어 있는 공단지대는 그나마 이러한 제도가 있지만, 그들의 분포가 높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는 교육시설이나 프로그램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어 여타 다른 후차적 교육복지혜택에 대한 추가적 요구는 언급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2.2 교육 프로그램의 종류 및 대상의 편중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조선족과 새터민 등의 재입국 동포보다는 인종적 소수자인 외국인근로자, 특히 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문화 및 사고방식의 이질성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 등의 내재적 문제보다는 언어 소통, 가정 파괴, 자녀양육 등 다문화 사회의 결혼이주자 및 외국노동자에게 있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복지센터 및 한국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전체 장기체류외국인의 14% 내외에 그치는 결혼이주자의 성인층, 특히 여성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편중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의 <표 2.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웹사이트에서 발췌한 것으로,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이 결혼이주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표 2.1>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사업 현황(2006년도)

시도	구분	사업비			참여기관
		국 고	대 응	계	
강원	외국인 주부 이역 동화 프로그램	94	0	94	강원RHRD, 강릉시청, 3개 여성단체협의회, 2개 새마을부녀회, 속초여자기독청년회
경남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및 지원사업	48	0	48	경남대, 경상남도, 마산 등 9개 시군
광주 전남	다문화가정 사회정착 지원 사업	80	0	80	전남여성회관, 시군기초지자체, 지역소재 대학, 시민단체 등
	농촌 결혼이주여성 및 그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	200	46	245	광주교육청, 지역교육청, 초·고등학교, 북부경찰서, 중앙여고, 카톨릭센터 등
대구 경북	결혼이주여성 정착사업	338	130	468	경북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계명대한국어학당,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텍스코, 현대호텔, 안동대 등
대전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 이주노동자 정착교육 프로그램	30	20	50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MBC, 대전산업단지공단, 보령시청, 한국수자원공사, 금산군청 등
부산	해외 이주부녀자 자활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137	0	137	영산대, 진구여성인력개발센터
	코시안(혼혈자녀) 정체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189	0	189	경성대, 동아대
울산	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개발 및 도우미 양성사업	60	10	70	울산건강가정지원센터, 울산YMCA, 복지관, 여성회관, 여성의 전화 등
전북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사회적응지원사업	400	50	450	전라북도, 전북교육청, 농업기술원, 문화원, 이민자지원센터 등
충남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557	324	881	천안건강가정지원센터, 충남 16개 시군
충북	결혼이민여성 및 2세 자녀 능력개발 사업	80	0	80	충북여성발전센터, 충북 12개 시군
합계		2213	580	2,793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9)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결혼이주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결혼 여성 이주자의 수가 남성보다 월등히 많고, 부모의 혼재된 민족과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그들 가정 자녀들이 정체성의 혼란, 언어발달 및 소통의 어려움으로 학습부진이나 집단 따돌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결혼 이주자의 자녀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산업 연수생 등 다양

한 형태의 장기체류외국인과 그들 자녀의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를 조속히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은 일종의 장기적 플랜으로, 그들을 교육한다고 해서 단기간 내에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 줄 수는 없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과 결혼 여성 이주자를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에 대한 예로, 다문화 커뮤니티의 관련 기관인 시흥시 외국인 복지센터에서도 결혼 이주 여성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생활 교육체험 및 다문화가족의 자존감 향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의 성인교육중심의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프로그램의 종류별 다양성도 고려해야 하며, 이는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 또는 민간 다문화관련 기관들이 이와 유사한 다문화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 종류는 방과 후 공부방, 멘토링, 문화체험주위의 놀토 프로그램, 영유아 대상 미술 심리치료, 언어발달 지원사업, 놀토 동아리 활동, 그리고 축제나 캠프, 성교육, 상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각 기관에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이나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육아 편향적·단기적 성격을 띠고 있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많다. 또한 공교육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교육도 세계화·글로벌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의식개혁이나 인권적 존중을 목표로 진행되는 내용은 비교적 적은 반면, 대부분이 타문화 체험이나 언어학습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2.3 콘텐츠의 질적 저조

현재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의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질적인 수준에 대한 보완책의 필요성이 여러 연구 또는 보고 자료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적 비전이나 방향성에 비중을 둔 교육 과정 개발이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교육에 있어 다문화교육과 관련되어 다문화이해 및 수용을 과제로 수업을 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렇지만 문화체험과 언어교육을 통한 다문화 접근법은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으나, 수업결과나 평가체계와 같은 학습커리큘럼의 부재, 그리고 미흡한 교사교육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학문적 성과를 이루어 내는 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이 교육을 통해 종류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고는 있으나 재정 조달의 어려움이 있고, 학습 커리큘럼과 교재 및 부자재의 부족과 전문교사의 부재라는 문제가 있다.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적 지원은 중장기적 기획에 불과하며, 이와 같은 결과는 사전적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구시행을 위한 정부 당국의 조속한 대처와 전문지식이 미비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학과 다문화 관련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수행된 바 있다. 최근 들어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 이해를 위한 교양교재 저술, 다문화교육 교원 양성 프로그램,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 및 성과 분석 등

다양한 연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으며, 보다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내용 및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대학에서 다문화 학과를 신설하거나 전문 연구 기관들이 설립되어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다문화 교육용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2.4 제한된 지역 및 시행기관

다문화가정 교육 프로그램은 2007년 이후 급증하는 다문화 인구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구체적 계획안을 발표를 선두로 공교육기관에서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종교단체, 복지센터, 교육청, 대학 등 공공 및 민간 개별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거나 타사업의 세부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 프로그램은 대안교육기관, 중앙 다문화 청소년 전문기관, 지역사회 다문화 전문기관, 지역 청소년 기관으로 시행기관이 분류되어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전국적으로 여러 기관단체에서 다문화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관들이 시흥이나 안산과 같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또한 일반인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보다 많은 다문화 가족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3. 다문화가정 사회정책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윤동화, 2009)

3.1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적 편견에 대한 법제도 개선

첫째, 법무부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 배우자라도 한국인과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을 미끼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부당한 대우를 근절할 수 있고 한국인 배우자는 잠재적인 가해자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정확한 정보 없이 이루어지는 사기 결혼, 언어·문화적인 갈등으로 인한 가정폭력 및 혼인파탄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여성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혼 또는 별거로 여성의 체류자격유지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배우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체류자격 변경으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했던 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 혼혈인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을 더욱더 폭넓게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에게 건강보험 가입 안내에 대한 리플렛 등을 제작·배포하는 활동과 지원이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여성부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자녀양육법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한국문화 이해 교육 및 자녀 양육법 지도 등의 전문가를 육성하여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유도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술치유시범사업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연구를 실시하고 있지만 더욱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문화소외계층'으로 보아 더 많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실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다수 다문화가정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들은 한국 국적이 없으므로 경제활동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외국인 배우자들의 능력개발 프로그램과 취업 기회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불화가 대체적으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므로 전세와 월세 용자, 무주택, 빈곤 다문화가정에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준다면 많은 경우의 가정불화를 없앨 수 있고 그로 인한 폭력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2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첫째,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무조건 한국화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장점을 인정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단위에서의 교육과 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미등록 가족들에 대한 출산도우미 지원이 필요하다. 비록 그 아이들에게 한국 국적을 줄 순 없다고 해도 엄마와 아기를 위해 출산 도우미를 파견하는 인도적 지원이 요청된다.

셋째, 국제결혼 알선업체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국제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여성들의 인생은 그들이 제공하는 거짓 정보로 파괴되고 있다. 결혼알선업체의 횡포와 거짓 정보로 파괴되는 것은 비단 이주여성만이 아니다. 한국인 남성 배우자도 피해자는 마찬가지이다. 현재 신고업인 결혼알선업체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역인적자원 개발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촉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즉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NGO, 대학, 언론, 기업 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이 협력 추진하는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섯째,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조례 제정 및 정책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설마련, 기구의 설치, 상담소 운영 등의 예산확보를 위한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가급적 조례로 제정되어야 안정적이고, 기획력이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조례에는 결혼이민자가족의 복리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기금 및 재원마련, 결혼이민자 지원 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다문화사회이해확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책이 효율성을 위한 조정체계 구축 및 공무원 다문화 교육부서 간 사업의 중복을 막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행정라인의

조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중장기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각 부문별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일회성, 물량위주의 사업추진이 아닌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이 가능해진다.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고 결혼이민자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책비전과 연도별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 제시하여야 한다. 정책수립 시에는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프로그램의 시행보다는 결혼이민자의 특성(지역별, 출신국가별, 연령대별, 거주기간별)을 고려한 정책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도 및 시군별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립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정책요구도 조사를 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자가족 관련 DB를 구축하고 별도의 통계집을 발간하도록 하고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을 위한 도 및 시군별 가용 인적자원현황과 관련기관 분포 및 사업실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부족한 자원을 확충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로드맵 작성이 필요하다.

여덟째, 다문화정책위원회 운영 및 관련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정책비전 제시와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정책 검토·자문기능을 담당하는 다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반드시 일정 수 포함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도내 결혼이민자가족 관련사업 및 지원이 가능한 기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의 중복을 막고 협력체제구축을 통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관련기관 종사자 및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결국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사회의 관련 기관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가족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나며,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의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교육 복지적 측면의 정책 수립과 집행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다문화사회는 이전의 어떤 형태의 문화에서보다도 다양성, 차이, 이질성을 서로 간에 인정해야 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사회가 형성된 가장 주된 배경은 산업 인력 및 유학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한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가족 형태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 관련 정책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

다. 다문화 정책은 성격상 정책 행위자 주체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하며 각 주체의 역량에 적합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부모 및 자녀들을 위한 교육적 정책도 필요하다. 즉 전반적인 사회통합적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과 집행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다문화사회에 관련된 문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이주노동자가 대체하거나 한국인이 배우자를 외국에서 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 자체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다문화가족을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통합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결혼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인 및 그 자녀들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들은 언어문제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부적응과 가족 구성원 간 갈등, 자녀교육 곤란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대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특별히 마련되어야 한다. 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 본인은 물론이려니와, 특히 이들의 자녀 세대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국가적 차원의 투자가 요구된다. 결혼이민자 및 이주노동자 가족 내에는 출생문화, 민족적 구성, 체류자격에 따른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지원방식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위와 같은 많은 문제들을 가족정책 차원에서 예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를 정비하여야 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들은 미흡하며 체계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 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그리고 대학교 등이 갖은 토론회와 포럼을 통해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은 정부부처, 복지기관 및 민간단체의 단기교육에서 여러 대학교로의 장기교육의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족한 다문화 교육의 양과 횡수를 늘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종류 및 대상의 편중성을 탈피해서 콘텐츠의 질적 저조를 향상시켜 기존의 제한된 지역 및 시행기관을 더 많이 늘여야 한다. 또한 교재의 내용을 충실히 하고 양성과정의 이수시간을 충분히 해서 관련 분야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그 교육내용의 강화와 수료자에 대한 진로 및 특전의 부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예산 지원규모를 늘여 정기적인 보수교육의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5. 참고 문헌

- [1] 조영달(2006),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실태』, 교육 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 [2] 박성혁, 정상환, 곽한영, 서유란, 이수이, 김명정, 송성민, 우희숙(2008), 『다문화교육정책국제비교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3] 권재일, 서덕희, 서현정, 이태주, 조용환, 한건수, 한경구, 한준상, 황병하(2008), 『다문화 사회의 이해 : 다문화 교육의 현실과 전망』,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동녘출판사.
- [4] 법무부(2008), 『다문화 이해증진 및 이민자 사회통합 ABT대학 최종 선정 공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5] 양계민, 조혜영, 이수정(2009), 『미래한국사회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6] 설동훈, 김찬기(2009),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 개편을 위한 연구」, 법무부.
- [7] 윤동화(2009), 「다문화가정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구정희(2010), 『More Together More Happy』, 경기도 지원 다문화 사회를 위한 의식개선 사업 자료집.
- [9] 정지윤(2011),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실태와 요구 분석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국제이민기구(IOM) 홈페이지 <http://www.iom.int/jahia/Jahia/about-migration/facts-and-figures/lang/en>
- [11] 교육 과학 기술부 http://www.mest.go.kr/me_kor/index.jsp
- [12] 법무부 <http://www.moj.go.kr> (체류외국인 130만 명 돌파)

<부록> 용어설명(구정희, 2010)

1. 외국인근로자/이주노동자

기준에 영위하던 생활의 근거지를 벗어나 언어나 사회적 관습 등이 다른 생활근거지나 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고용주와의 관계에 있어 수직적 관계가 아닌 계약에 의한 수평적 관계임을 나타내기 위해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어 부르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역시 외국인 노동자로 달리 불리게 됩니다. 최근에는 국적보다 노동하는 장소를 이동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을 더욱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국내 3D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991년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 지침’을 근거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외국인력산업기술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기 시작했으나 벌써 이십여 년째 우리 사회에서 이웃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개그 프로그램인 ‘블랑카’의 극 중 대사를 기억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스리랑카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블랑카입니다. 한국에 일 많이 있어요. 돈 조금 벌었어요. 사장님 계속 일하라 일하라 합니다. 한번은 저 너무 일 많이 해서 몸 아팠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일 못 하겠다 했더니 사장님 새키 새키하면서 막 때렸어요. 허리 때렸어요. 배 때렸어요. 어깨 때렸어요. 왜 때리냐고 했더니 입을 도 때렸어요. 뽀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수많은 블랑카들을 부르는 통상적인 호칭에 ‘새키’였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웃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라트너, 사만, 자나카,,,. 좋은 듯이 담긴 아름다운 관계를 되돌려줄 거예요. “사만 씨~ 어디 가세요?”

2.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

법무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수는 700여만 명으로 중국, 이스라엘,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세계 최상위인 셈이죠. 여기서 재외동포란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를 가리켜 재일교포, 재일동포라고 부릅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는 재미교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 ‘조선족’이란 말은 중국인들이 중국에 있는 여러 소수 민족 가운데 한국계 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전히 ‘조선조’이라고 부르고 계시진 않나요?

3. 혼혈인/혼혈아동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혈통이 다른 종족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뜻만 풀이한다면 문제가 없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우리는 한국이 순수혈통 사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호칭에 피부색과 인종에 의한 차별적 의미를 담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6.25전쟁을 거치며 태어난 혼혈 1세대에게 ‘잡종’ 혹은 ‘튀기’, ‘아이노크’ 등으로 멸시하거나 비하하는 부정적인 호칭들을 많이 써왔습니다.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1세대를 부르던 말에 덧붙여 ‘코메리칸’, ‘아메리시안’, ‘아이꼬노’, ‘온누리안’ 등을 사용해왔습니다.

6.25전쟁 60주년을 맞는 지금, 외국인 130만 명 시대인 지금은 어떨까요?

4. 다문화가정

그동안 외국인이 가족구성원으로 포함된 가정을 ‘국제결혼가정’이라는 호칭으로 불러왔습니다만, 이 말 역시 혼혈아와 마찬가지로 우리와는 혈통이 다르다는 거리감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이 꼭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가정이란 두 남녀가 결혼이라는 의례를 통해 한가족이 되어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인이 되기까지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성장한 두 남녀가 새롭게 공동체를 이루었기에 사소한 생활양식에서도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에 차리는 차례 상을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상 차리는 순서 등에 공통적인 사항이 있지만, 지역에 따라 상에 올리는 음식에 차이가 있습

니다. 해산물이 풍부한 경상도와 임산물이 풍부한 강원도의 상차림 내용이 같을 수는 없겠지요. 이런 의미에서 모든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의 가정이 피부색이나 언어의 차이 때문에 외관상 차이가 두드러질 뿐 인거죠.

5. 외국인주민

주민이란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경기도에서 제정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서는 도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하는 사람 등으로 외국인주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이주노동자, 외국국적 동포, 다문화 가정 모두 외국인 주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늘 ‘외국인’입니다. 이 단어로 말미암아 상대방에 대해 알기 전부터 뭔가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분명한 거리감이 존재하는 말입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와 같이 슈퍼마켓을 이용하고 쓰레기분리 수거를 어려워하는, 더불어 생활하는 ‘주민’이라고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익숙함의 온도가 달라집니다.